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발 의 자 : 유승용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안 제8조 ~ 안 제12조)
-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유승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1
----------	-----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일

발 의 자 : 유승용 의원(1명)

찬 성 자 :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의원(5명)

## 1. 제안이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가스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안 제8조 ~ 안 제12조)

다.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온실가스), 제28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4. 5. ~ 4. 11.)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 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구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구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 수립 및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자원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4.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사용과 보급활동
5.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

**제11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시장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구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3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와 기구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 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